

강원관광대학 학생지도위원회 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 8장, 제 9장, 제 10장에 의하여 학생활동의 지도 및 학생의 후생, 복지,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학생지도위원회(이하“본 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 및 임기)

1. 본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, 교무처장,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.
2. 학생지원처장이 본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3. 학생지도 담당자가 그 실무를 담당한다.
4.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제 3 조 (기능) 본 위원회는 학생지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학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
2. 학생회의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사항
3. 학생자치기구 운영상의 제반규정에 관한 사항(총학생회 회칙, 선거관리위원회, 동아리조직 등록 및 운영규정, 졸업준비위원회 등)의 개폐·제정에 관한 지도와 승인여부
4.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
5. 회비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
6. 사업계획, 예산편성,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
7. 학생복지생활에 관한 사항
8. 학생지도위원회의 지시 불응에 대한 학생자치기구의 처벌 심의에 관한 사항
9.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4 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제 3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의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한다. (단,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)

제 5 조 (운영) ①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지도위원에게 학교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학생지도 담당자에게 매월 소정의 학생 지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회의록) 모든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한다.

제 7 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정관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행정부서 명칭은 본규정이 개정된 시점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.